

사업설명회

『모기업-협력업체』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 안내

2015. 2월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 I. 개 요

##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이란?

모기업(원도급업체)과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 모기업에서 협력업체에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고, 공단은 현장기술지도,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

### ● '12년~'13년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14년부터 공단에서 추진

\* 동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제29조(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의무이행을 공고히 하는 한편, 모기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 공생발전을 이루기 위함임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 협의체 구성운영/작업장 순회점검/교육지도.지원/작업환경측정/경보운영
- 산재발생 위험장소에 산재예방조치/합동점검/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제공/위생시설 협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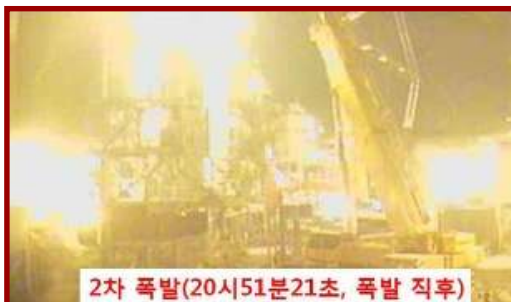
## 〈협력업체 중대재해 사례〉



# 1. 저장탱크(사일로) 보수작업 중 폭발

재  
해  
개  
요

' 13.3.14(목) ○○○○(주)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 공장 저장탱크(사일로) 2층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일로 하부 측면에 맨홀을 설치하는 작업 중 폭발이 발생하여 사망 6명, 부상 11명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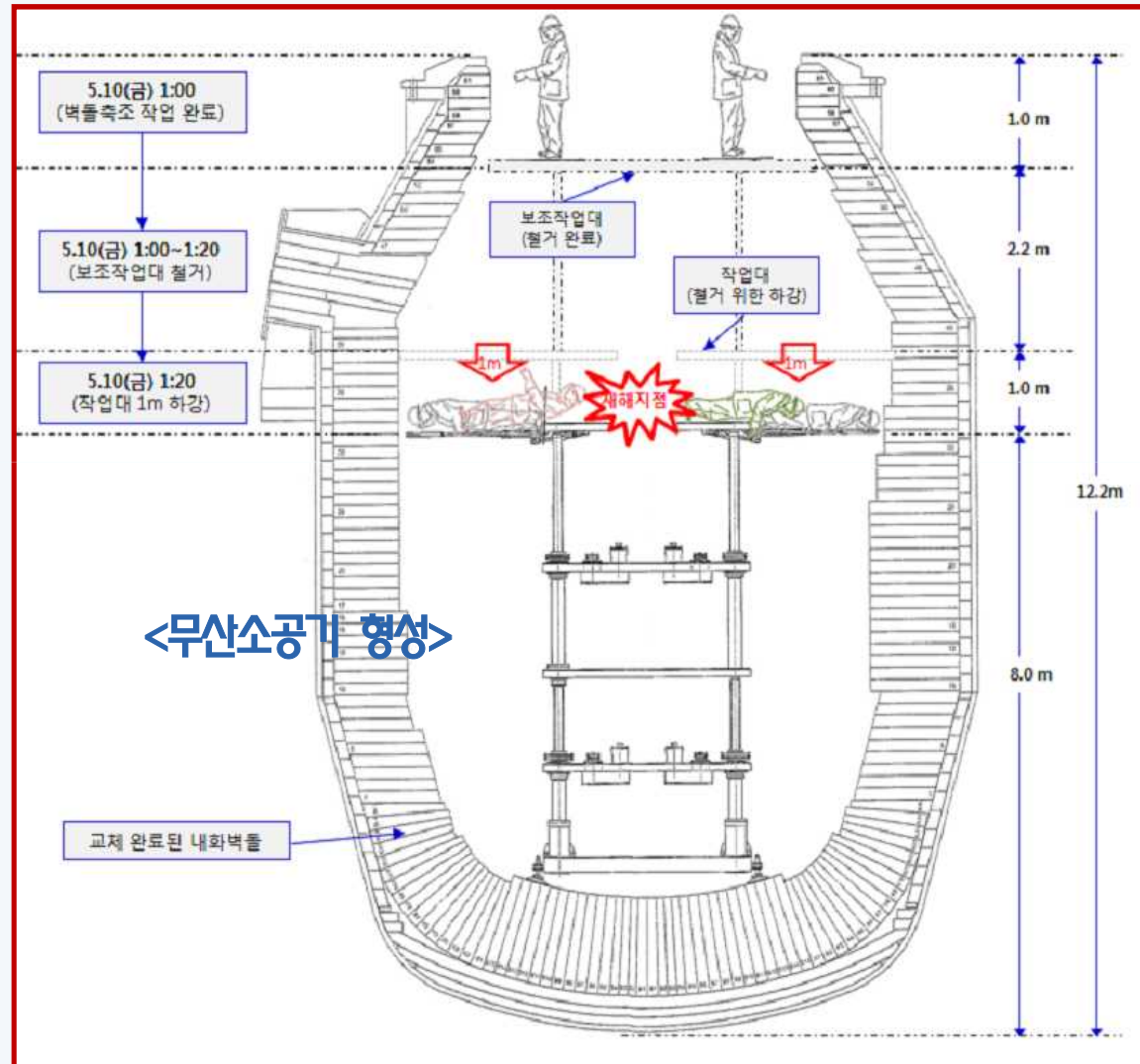


## 2. 전로의 내화벽돌 축조작업 중 아르곤가스에 질식

### ● 사고 개요

✓ '13. 5. 10(금) ○  
○○○(주) ○○공장의  
전로 내부의 내화벽돌 축조  
작업 중 협력업체에서 아  
르곤(Ar) 가스 배관의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밸브에서 누설이 발생하여  
아르곤가스가 전로로 유입  
되어 내화벽돌 축조작업자  
5명이 작업완료 후 전로  
하층부로 내려가던 중 누  
출된 아르곤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 5명 발생

\*전로 : 선철의 불순물제거,  
강으로 만듦)



### 3. 관내 협력업체 중대재해 사례(최근 3년)

- **천장크레인을 사용한 중량물(셀플랜지) 운반 중 운반 중량물이 떨어져 중량물과 바닥 사이 머리가 끼어 사망**
  - \* 중량물 작업계획서 미작성, 부적절한 줄걸이, 위험구역에 위치
- **휴대용 연삭기 사용, 수공구 연삭작업 중 감전, 사망**
  - \* 접지/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조치 미실시
- **크레인 줄걸이 해체위해 고소작업(4.5m) 중 떨어져 사망**
  - \* 고소작업 떨어짐 방지조치 미실시, 보호구 미착용,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 **이동식사다리(A형, 2.5m) 위에서 작업중 떨어져 사망**
  - \* 배관철거 작업에 불안정한 이동식 사다리 사용, 개인보호구 미착용

## Ⅱ. 추진절차



## Ⅲ. 세부추진 절차

### 1 사업대상 선정 (고용부, 공단)

- 참여대상 : 원·하청 100인 이상 모기업 및 협력업체
- 대상업종 : 제조업, 전기업, 통신업, 서비스업, 운수창고업
- 사업대상 선정 기준

- ✓ ① 100인 이상 사업장 중 협력업체 다수 보유사업장
- ✓ ② 모기업 및 협력업체 포함 100인 이상 사업장
- ✓ ③ '12~'14년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사업장
- ✓ ④ 최근 도급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 등 사업참여 필요사업장

※ '14. 대상 중 식당/경비업무 수행 협력업체만 구성된 모기업 제외



## Ⅲ. 세부추진 절차

### 2 프로그램 계획서 제출 [사업장 →공단]

- 제출기간 : '15.3.2(월) ~ 3.13(금), 2주간
- 제출처 : 경기남부지사[제조/전기 : 산안팀, 서비스 : 협력지원팀]
- 제출서류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첨부1]사업장 현황 조사표

[첨부2]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협력업체 현황

\* 사내 협력업체는 전체, 사외 협력업체는 자율적 참여, 단 주기적으로 정비·보수 업무를 하는 사외협력업체는 반드시 포함

[첨부3]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

[첨부4]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 Ⅲ. 세부추진 절차

### [참여신청서]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                                                                                                                        |                     |                |
|--------------------------------------------------------------------------------------------------------------------------------------------------------------------------------------------------------------------|------------------------------------------------------------------------------------------------------------------------|---------------------|----------------|
| 사업장명                                                                                                                                                                                                               |                                                                                                                        | 사업장관리번호<br>(사업개시번호) |                |
| 대 표 자                                                                                                                                                                                                              |                                                                                                                        | 전 화 번 호<br>(FAX)    | - -<br>( - - ) |
| 협력업체<br>참여현황                                                                                                                                                                                                       | 사내 : 개소(명)<br>사외 : 개소(명)                                                                                               | 근로자수(원정)            | 명              |
| 주요 생산품                                                                                                                                                                                                             |                                                                                                                        | 업종                  |                |
| 소재지                                                                                                                                                                                                                | □□□-□□□                                                                                                                |                     |                |
| 첨부서류                                                                                                                                                                                                               | 1. 사업장 현황 조사표 1부.<br>2.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협력업체 현황 1부.<br>3.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세부추진계획 1부.<br>4.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1부. |                     |                |
| 우리 사업장은 2015년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을 불임과 같이 신청합니다.<br><div style="text-align: right;">2015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right;">대표자 (서명 또는 인)</div> <div style="text-align: right;">협력업체 사업주 (연명 서명 또는 인)</div> |                                                                                                                        |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장 귀하                                                                                                                                                                                         |                                                                                                                        |                     |                |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생 략 )

성명(대표자 본인) :

서명

공생협력 담당자 :

서명

## Ⅲ. 세부추진 절차

### □ 첨부 1 : 사업장 현황조사표

#### ■ 일반현황

|                     |                                                                                                                                                                                       |                |                    |
|---------------------|---------------------------------------------------------------------------------------------------------------------------------------------------------------------------------------|----------------|--------------------|
| 사업장명                | 주요생산물<br>(매출액)                                                                                                                                                                        |                |                    |
| 사업장규모               | .상시근로자: 명 (교대작업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br>.비정규근로자: 명 .사내협력업체 : 개사( 명)                                                                            |                |                    |
| 안전관리현황              | <input type="checkbox"/> 선임(안전,보건) <input type="checkbox"/> 대행(안전,보건)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                    |
| 시스템<br>인증여부         | <input type="checkbox"/> KOSHA 18001, <input type="checkbox"/> OHSAS 18001, <input type="checkbox"/> ISO 14001, <input type="checkbox"/> ISO 9001,<br><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재해자수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 재해자수<br>(사망자수)                                                                                                                                                                        | 재해자수<br>(사망자수) | 재해자수<br>(사망자수)     |
|                     |                                                                                                                                                                                       |                |                    |
| 사망사고<br>내 용         | -<br>-                                                                                                                                                                                |                |                    |
| 공생협력<br>프로그램<br>담당자 | 부서명<br>(직책)                                                                                                                                                                           |                | 성명                 |
|                     | 전화번호<br>(Fax)                                                                                                                                                                         |                | 휴대폰 번호<br>(e-mail) |

#### ■ 주요공정 및 유해·위험성

(KOSHA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나 사업장보유자료로 대체 제출 가능)

→→→→

| 공정명 | 주작업내용 | 유해및위험설비<br>(중요대상) | 잠재위험성<br>(협착·충돌·전도·감전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이 복잡한 경우는 주요 공정에 한하여 간략히 작성

## Ⅱ. 세부추진 절차

## □ 첨부 2 :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협력업체 현황

[illegible]

## Ⅲ. 세부추진 절차

### □ 첨부 3 : 공생협력 프로그램 세부추진계획(서) [예]

1. 신청 사업장명 : **신청서**의 사업명과 **동일**하게 기재 (**사업장 소개**)
2. 공생협력사업 계획 개요
  - 기업 최고책임자(CEO)의 정책목표 및 의지, 추진사업, 인적·물적 투자계획 등

#### 2-1 경영철학 - SKMS



SK Management System  
-기업의 가치추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해관계자의 행복이다



아름다운 동행

#### 2. 공생협력 방침 및 전략

「행복동반자 경영」선언 (2005.11.30)

SK는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기업과 협력회사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임



대·중소기업 협력 대통령표창(2006.12)



아름다운 동행상 표창(2006.6)

“SK는 협력업체를 필요로 하고, 협력업체는 SK를 필요로 하는  
원-원식 비즈니스 구조와 탄탄한 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동반성장”

“일회성 상생 프로그램 보다 협력사의 경쟁력을 본질적으로 강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Ⅱ. 세부추진 절차

## II. 공생협력 프로그램 활동계획

#### 4. 활동 계획-전체 진행 Sched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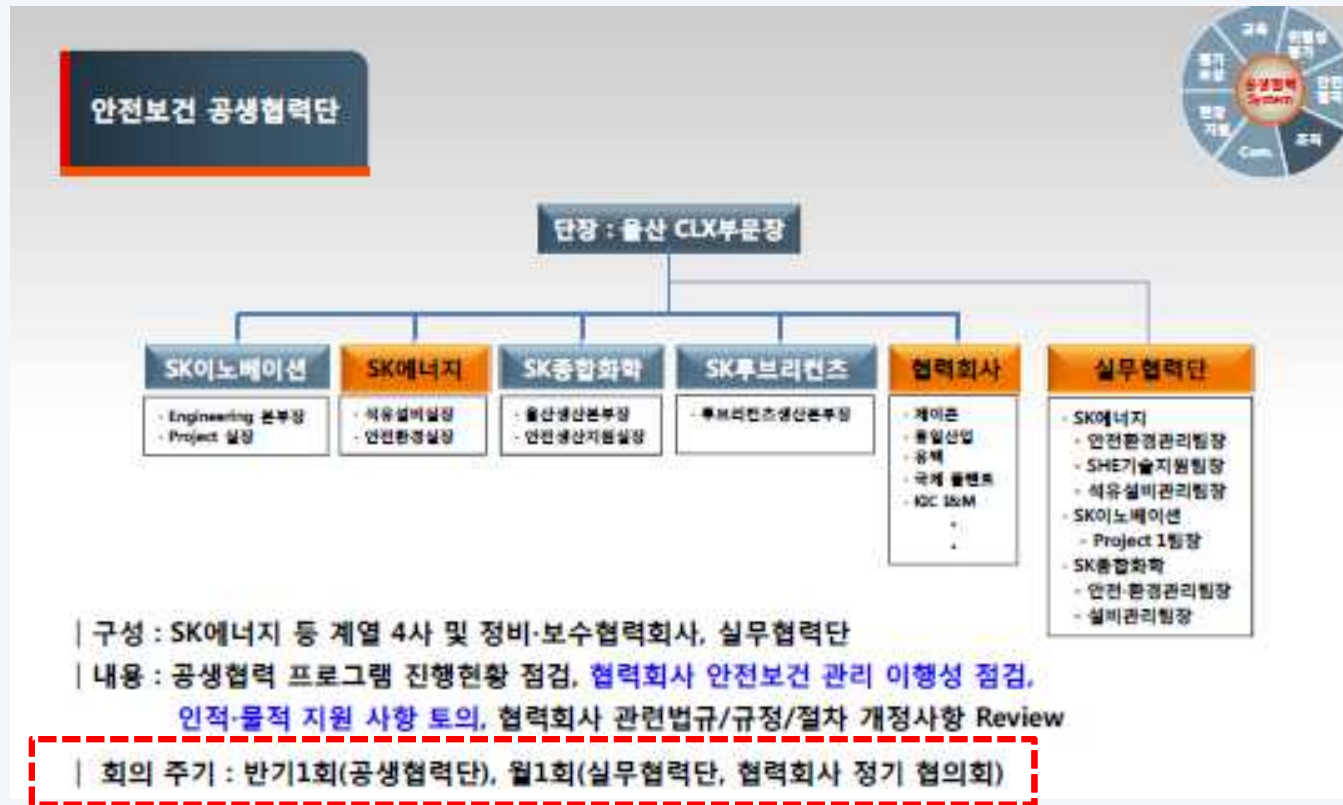
※ 전체 진행 Schedule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 <b>4월</b> |      | <b>5월</b> |      | <b>6월</b> |      | <b>7월</b> |      | <b>8월</b> |      | <b>9월</b> |      | <b>10월</b> |      | <b>11월</b> |      |
|--------------------------|-----------|------|-----------|------|-----------|------|-----------|------|-----------|------|-----------|------|------------|------|------------|------|
|                          | 1~2주      | 3~4주 | 1~2주      | 3~4주 | 1~2주      | 3~4주 | 1~2주      | 3~4주 | 1~2주      | 3~4주 | 1~2주      | 3~4주 | 1~2주       | 3~4주 | 1~2주       | 3~4주 |
| <b>업력단 정기회의<br/>[매월]</b> |           |      |           |      |           |      |           |      |           |      |           |      |            |      |            |      |
| <b>위험성평가기본<br/>교육</b>    |           |      |           |      |           |      |           |      |           |      |           |      |            |      |            |      |
| <b>위험성평가대상<br/>선정</b>    |           |      |           |      |           |      |           |      |           |      |           |      |            |      |            |      |
| <b>위험성평가<br/>실시</b>      |           |      |           |      |           |      |           |      |           |      |           |      |            |      |            |      |
| <b>위험성평가<br/>개선계획수립</b>  |           |      |           |      |           |      |           |      |           |      |           |      |            |      |            |      |
| <b>현장 개선 실시</b>          |           |      |           |      |           |      |           |      |           |      |           |      |            |      |            |      |
| <b>지게차<br/>특별안전 교육</b>   |           |      |           |      |           |      |           |      |           |      |           |      |            |      |            |      |
| Safety Information<br>제공 |           |      |           |      |           |      |           |      |           |      |           |      |            |      |            |      |
| <b>작업절차서 개정</b>          |           |      |           |      |           |      |           |      |           |      |           |      |            |      |            |      |
| <b>중간 공유회 실시</b>         |           |      |           |      |           |      |           |      |           |      |           |      |            |      |            |      |
| <b>아자사고사례 공모</b>         |           |      |           |      |           |      |           |      |           |      |           |      |            |      |            |      |
| <b>특수 검강검진</b>           |           |      |           |      |           |      |           |      |           |      |           |      |            |      |            |      |
| <b>주기적인 교육자료<br/>지원</b>  |           |      |           |      |           |      |           |      |           |      |           |      |            |      |            |      |
| <b>성과공유 / 업제 포상</b>      |           |      |           |      |           |      |           |      |           |      |           |      |            |      |            |      |

## Ⅲ. 세부추진 절차

### □ 첨부 3 : 공생협력 프로그램 세부추진계획(서)

#### 3. 「안전보건 공생협력단」 구성 및 운영계획 [예] - 구성인원(소속, 직책, 자격, 성명), 회의·활동일정 등



## Ⅲ. 세부추진 절차

### □ 첨부 3 : 공생협력 프로그램 세부추진계획(서)

#### 4.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 참여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계획(협력업체별 일정 포함)

#### 5.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협력업체 협력·지원 계획

- 협력단 운영·활동, 협력·지원방법 등(일정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위험성평가 인정 지원계획 포함

- 세부 개선계획(위험성 감소계획)은 위험성평가 실시 후 5월15일까지 제출

#### 6.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계획 :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풍토조성계획 등

- 보호구 착용, 안전작업 절차 준수, 안전표지 부착, 안전보건 교육 실시

#### 7. 사업평가계획 : 프로그램 성실 이행도, 법규준수, 협력업체 대표자 및 근로자 만족도 등

## Ⅲ. 세부추진 절차

### □ 첨부 4 :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우리 사업장은 2015년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

1. **보호구** 착용
2. **안전작업 절차** 준수
3. **안전표지** 부착
4. **안전보건 교육** 실시

2015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협력업체 대표자

(연명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장 귀하

# 표. 세부추진 절차

제1부 1장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신청대상: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신청기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청처: 안전보건공단(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길 12)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사업장 대표자(또는 안전보건 담당자)가 직인 및 도장을 찍어 신청한다.  
신청비용: 없음  
신청결과: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신청서 접수 확인 통지(또는 불합격 통지)를 발송한다.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신청서 작성 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신청서 작성 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신청서 작성 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신청서 작성 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제1부 2장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이행계획서**

신청대상: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신청기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청처: 안전보건공단(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길 12)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사업장 대표자(또는 안전보건 담당자)가 직인 및 도장을 찍어 신청한다.  
신청비용: 없음  
신청결과: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신청서 접수 확인 통지(또는 불합격 통지)를 발송한다.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신청서 작성 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신청서 작성 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제1부 3장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

신청대상: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신청기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청처: 안전보건공단(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길 12)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사업장 대표자(또는 안전보건 담당자)가 직인 및 도장을 찍어 신청한다.  
신청비용: 없음  
신청결과: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신청서 접수 확인 통지(또는 불합격 통지)를 발송한다.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신청서 작성 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신청서 작성 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제1부 4장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신청대상: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신청기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청처: 안전보건공단(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길 12)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사업장 대표자(또는 안전보건 담당자)가 직인 및 도장을 찍어 신청한다.  
신청비용: 없음  
신청결과: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신청서 접수 확인 통지(또는 불합격 통지)를 발송한다.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신청서 작성 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신청서 작성 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신 청 서]

[첨부1 : 현황조사표]

[첨부2 : 협력업체 현황]

[첨부3 : 세부계획서]

[첨부4 : 안전수칙 서약서]

## 프로그램 세부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안전보건 공생 협력단 구성·운영 방법
- ✓ 참여대상 협력업체 명단(협력업체 자체선정계획 포함)
- ✓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활동 실시 계획·방법
  - \* 프로그램에는 '위험성평가 인정', 'KOSHA18001 인증' 지원 계획 포함
- ✓ 위험성평가 결과 등에 따른 협력업체 지원계획
- ✓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이행계획
- ✓ 프로그램(활동) 평가 계획 등

## Ⅲ. 세부추진 절차

### 3 프로그램 심사·승인 (심사위원회)

- 심사기간 : 3월말
- 심사방법 :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단,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심사항목
  - ✓ 대기업의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의지(비전, 인적/물적 추진계획)
  - ✓ 협력업체 선정의 적정성(자체 선정기준에 따른 산재취약사업장 선정)
  - ✓ 협력단 구성의 적정성(책임자급을 포함한 적정한 조직구성)
  - ✓ 협력단 활동의 적정성(협력업체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활동계획)
  - ✓ 협력사업 계획의 효과성(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향상 지원계획)
  - ✓ 협력사업 투자의 적정성(위험성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집행계획)
  - ✓ 프로그램 성과평가(계획대비 이행도 측정, 법규준수, 만족도 조사 등)



# 표. 세부추진 절차

## [공생협력 프로그램 심사표]

[붙임 2]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심사표

☐ 사업장명 (원도금업체명):

| 평가항목                 | 평가 지표(판단 기준)                                                                                                                                                                                                                                                                                                                                                                            | 평가결과                                                                                      |
|----------------------|-----------------------------------------------------------------------------------------------------------------------------------------------------------------------------------------------------------------------------------------------------------------------------------------------------------------------------------------------------------------------------------------|-------------------------------------------------------------------------------------------|
| 다기연속<br>공생협력<br>추진여부 | <input type="checkbox"/> 사업장이 공생협력프로그램 추진에 의지가 있는가?<br><input checked="" type="checkbox"/> 우수: 사업주가 공생협력프로그램 추진에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인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계획에 포함된 안전·보건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음<br><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통: 사업주가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저 불로미,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계획이 다소 미비함<br><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흡: 사업주가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모르고 있으며, 추진계획 및 다기연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미흡함 | <input type="checkbox"/> 우수<br><input type="checkbox"/> 보통<br><input type="checkbox"/> 미흡 |
| 협력업체<br>선정의<br>적절성   | <input type="checkbox"/> 공생협력이 필요한 협력업체를 선정하였는가?<br><input checked="" type="checkbox"/> 우수: 사내·외를 포함하여 지역 산업기반에 따라 신중하게 사업장별 모두 선정<br><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통: 자체 선정기준이 없이 사내·외 협력업체를 선정<br><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흡: 그외의 사업장을 누락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이 작은 협력업체 중심으로 선정<br>※ 화학물질, 발전회사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 사업장 협력업체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                                            | <input type="checkbox"/> 우수<br><input type="checkbox"/> 보통<br><input type="checkbox"/> 미흡 |
| 협력단<br>구성의<br>적절성    | <input type="checkbox"/> 협력단의 구성이 적절한가?<br><input checked="" type="checkbox"/> 우수: 해당사업장으로 구성하고 협력업체 위원장별가 지원을 위한 적절한 조직을 구성 (최소선정기준에 의한 협력업체 지원 포함)하고 활동 성과를 사업장에 보고하는 체계가 구축된 경우<br><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통: 해당사업장위원 이상으로 협력단이 구성되어 있으나, 협력업체 위원장별가 지원 조직(부정문)에 의한 협력업체 지원 포함 구성이 미비한 경우<br><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흡: 안전관리부서 안의 구성으로만 구성·운영              | <input type="checkbox"/> 우수<br><input type="checkbox"/> 보통<br><input type="checkbox"/> 미흡 |
| 협력단<br>활동의<br>적절성    | <input type="checkbox"/> 협력단의 공생협력 추진 활동 계획이 적극적인가?<br><input checked="" type="checkbox"/> 우수: 계획발령 수준, 위원장별 등 업무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활동(위원장별가·모 나리알·평가 등) 계획 및 협의의 중기적 계획 등 계획의 적극성<br><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통: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작성되어 있으나, 일제할 등 구체적인 계획 미비<br><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흡: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활동 계획만 작성                                                           | <input type="checkbox"/> 우수<br><input type="checkbox"/> 보통<br><input type="checkbox"/> 미흡 |
| 협력사업<br>계획의<br>효과성   | <input type="checkbox"/>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형상에 기여하도록 수립하였는가?<br><input checked="" type="checkbox"/> 우수: 계획발령 수준, 위원장별 등 업무 특성을 반영한 위원장별가 등을 통해 협력업체별 유해화학물질은 근원적으로 제거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 지원 방안을 밝히고 안전보건보건경영시스템, 위원장별가 인증(인정 계속 포함)<br><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통: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작성되어 있으나, 일제할 등 구체적인 계획 미비<br><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흡: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협력사업 중심으로 작성         | <input type="checkbox"/> 우수<br><input type="checkbox"/> 보통<br><input type="checkbox"/> 미흡 |
| 협력사업<br>투자의<br>적절성   | <input type="checkbox"/> 협력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적절한지?<br><input checked="" type="checkbox"/> 우수: 평가에 따른 협력업체별 또는 항목별 등 구체적인 예산 확보·실행 계획 작성<br><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통: 구체적인 예산계획은 있으나, 협력업체별 또는 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작성은 결여<br><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흡: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및 집행계획 없음                                                                                               | <input type="checkbox"/> 우수<br><input type="checkbox"/> 보통<br><input type="checkbox"/> 미흡 |
| 프로그램<br>성과평가         | <input type="checkbox"/> 공생협력 프로그램 성과평가 계획이 적절한지?<br><input checked="" type="checkbox"/> 우수: 활동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실적 이행도 측정·적용방법을 준수 여부, 하중업체 대 조사 및 근로자 만족도 조사 등 포함<br><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통: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작성되어 있으나, 일제할 등 구체적인 계획 미비<br><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흡: 단순 개체감소 조사만 평가                                                                               | <input type="checkbox"/> 우수<br><input type="checkbox"/> 보통<br><input type="checkbox"/> 미흡 |
| 종합판정                 |                                                                                                                                                                                                                                                                                                                                                                                         |                                                                                           |

## 심사기준

- 승인(미흡0개)

- 보완(미흡 1개~3개)

- 불승인(미흡 4개 이상)

✓ 보완사업장은 10일 이내  
계획서를 보완하여 공단  
에 다시 제출, 공단은 보완  
사항 확인 후 승인

※ 전년도 A등급 사업장은 참여 신청만으로 심사 완료

## Ⅲ. 세부추진 절차

4

### 개선계획서 제출 [사업장 →공단]

- 제출기간 : ~ 5.15일
- 제출처 : 공단 경기남부지사
- 개선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개요(협력업체별 일정, 방법 등)
  - ✓ 위험성평가를 통해 도출된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일정포함)
  - ✓ 위험성 감소를 위한 투자예산(예산을 부담하는 주체 명시)
  - ✓ 위험성평가 인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계획
  - ✓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이행계획 등

## Ⅲ. 세부추진 절차

### 5 현장기술지도 (공단 → 사업장)

- 지도기간 : 6월~7월
- 지도대상 : **사업물량의 50%**
  - ✓ '14년 C등급, '15년 신규참여, '14년 B등급 중 지도 필요사업장
- 지도내용(제출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기술지도 실시)
  - ✓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 지도
  -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교육, 근로자의 참여여부 확인
  - ✓ 위험성평가 내용 적정여부 지도
  - ✓ **협력업체(30% 내외)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요인 추가 발굴 등**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산재 취약부분 중점 지도

## Ⅲ. 세부추진 절차

### 6 추진실적 제출 (사업장 →공단)

- 제출기간 : ~ 9월말
- 제출처 : 공단 경기남부지사
- 제출 내용
  - ✓ 대기업 최고경영자의 추진의지 및 노력, **공생협력 규정**
  - ✓ 공생협력단 조직, 활동계획 및 실적, 위험성평가 수행조직 및 방법, 예산책정 등
  - ✓ 위험성평가 계획, 교육실적, 감소대책에 따른 개선내용
  - ✓ 공생협력 프로그램 **계획대비 이행 실적**
  - ✓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지키기 추진실적(교육, 보호구 지급 등)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및 위험성평가 인정 실적**
  - ✓ 참여 협력업체의 **만족도 조사**(대표자 및 근로자) 결과
  - ✓ **자체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등

## Ⅲ. 세부추진 절차

7

### 확인지도(모니터링) [공단 → 사업장]

- 지도기간 : 10월
- 지도 대상 : '15년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사업장(전수)
- 지도(모니터링)내용
  - ✓ 현장 기술지도 시 도출된 문제점 개선여부 확인
  - ✓ 개선계획서의 이행여부 확인
  - ✓ 추진실적에 대한 현장 확인
  - ✓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파악 등

## Ⅲ. 세부추진 절차

### 8 등급평가 (평가위원회)

- 평가기간 : 11월
- 심사방법 :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단,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평가항목

#### [대기업 부문] [60%]

- ✓ 공생협력 추진의지(10%)
- ✓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15%)
- ✓ 위험성평가 실행수준(20%)
- ✓ 공생협력 프로그램 성과평가(15%)

#### [협력업체 부문] [40%]

- ✓ 협력업체 자율안전보건 실행 수준 및 재해발생 수준(40%)



## Ⅲ. 세부추진 절차

### 세부평가항목(5개 평가항목)

#### □ A. 공생협력 추진의지(10%)

- 공생협력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인식 수준

#### □ B.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 적정성(15%)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규정 작성 ·공유(5)
- 안전보건 공생협력단 구성 및 활동의 적정성(85)
  - ✓ 협력업체 선정의 적정성(25)
  - ✓ 협력단 구성의 적정성(20)
  - ✓ 협력단 활동의 적정성(20)
  - ✓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지원 계획 수립·이행(20)
- 공생협력을 위한 예산 편성 ·집행의 적정성(10)

## Ⅲ. 세부추진 절차

### □ C. 위험성평가 실행수준(20%)

#### ● 위험성평가 계획(P)

-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10)
- ✓ 위험성평가 수행조직의 적정성(5)
- ✓ 위험성평가 대상공정, 작업의 분류에 필요한 정보 수집·활용(5)

#### ● 위험성평가 이행(D)

- ✓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여부(5)
- ✓ 유해·위험요인 파악(10)
- ✓ 위험성크기 추정, 결정, 감소대책 수립 및 개선활동(40)

#### ● 위험성평가 이행확인(C) (10)

#### ● 지속적 개선(수시/정기평가 계획수립/이행 : A) (10)

#### ● 기 록(5)

## Ⅲ. 세부추진 절차

### □ D. 공생협력 프로그램 성과평가(15%)

- 공생협력 프로그램 계획 대비 이행도(30)
- 적용법규의 준수(산안법 제29조) (10)
-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노력도(10)
- 만족도 조사 및 환류
  - ✓ 협력업체 대표자 및 근로자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25)
  - ✓ 협력업체 개선요구 사항 반영 수준(25)

### □ E. 협력업체 자율안전보건 실행 수준 및 재해발생 수준(40%)

- 자율안전보건 실행수준(50)
  - ✓ 참여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위험성평가 인정) 비율
- 재해발생 수준(50)
  - ✓ 참여 협력업체의 전년대비 재해감소율(20)
  - ✓ 참여 협력업체의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발생여부(30)

## Ⅲ. 세부추진 절차

【붙임 9】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표

1. 사업장(원도급)명:

| 구분        |                        | 반응(X) | 특성(Y) | 가중치(z) | 총합점수 $\sum(Y/X \times z = \tau)$ |
|-----------|------------------------|-------|-------|--------|----------------------------------|
| 대기업<br>부품 | A. 품질협약 추진의지           | 10C   |       | 10     |                                  |
|           | B. 품질협약 프로그램 운영 적절성    | 10C   |       | 15     |                                  |
|           | C. 품질협약기 실행 수준         | 10C   |       | 20     |                                  |
|           | D. 품질협약 프로그램 성과 평가     | 10C   |       | 15     |                                  |
| 중견기업      | E. 자발적인보러 수준 및 대내외성 수준 | 10C   |       | 40     |                                  |

## 2.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 비<br>교<br>적<br>검<br>사                | <b>A. 경쟁업체 수준(가)</b>                              |                                                         | 100 |    |
|                                      | 1. 기술력 수준                                         | ○ 경쟁업체 표준기술 이행을 위한 체계화의 지원력 적인 인식 수준                    | 100 |    |
|                                      | <b>B. 경쟁업체 표준기술 운영 적정성</b>                        |                                                         | 100 |    |
|                                      | 1. 발전규모의 수월                                       | ○ 진척현황, 규격, 조성, 공급                                      | 5   |    |
|                                      |                                                   | ○ 연차별 실적의 적절성                                           | 5   |    |
|                                      | 2. 합리적인 구성 및                                      | ○ 합리적인 구성의 조달성                                          | 20  |    |
|                                      | 합동성의 적정성                                          | ○ 합리적인 합동성의 조달성                                         | 20  |    |
|                                      |                                                   | ○ 합동성에 적합성평가 기준 충족 수월함 여부                               | 20  |    |
|                                      | 3. 예산 편성/운영 적정성                                   | ○ 경쟁업체 표준기술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 10  |    |
|                                      | <b>C. 경쟁업체가 실행 수준(연도별/사업자별)이 되는 인식(만점 40이 가능)</b> |                                                         | 100 |    |
|                                      |                                                   |                                                         | -   |    |
|                                      | 1. 계약관리                                           | ○ 계약수행자가 설치/정착시 수월                                      | 5   |    |
|                                      |                                                   | ○ 계약수행자가 수주조건과의 동등성                                     | 5   |    |
|                                      |                                                   | ○ 계약수행자가 대당금과 작업의 분담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할                     | 5   |    |
|                                      |                                                   | ○ 계약수행자(포괄) 관련 손실 대비                                    | 5   |    |
|                                      | 2. 이해(도)                                          | ○ 이해(도)에 필요한 사항                                         | 10  |    |
|                                      | ○ 이해(도) 근거 추출                                     | 5                                                       |     |    |
|                                      | ○ 이해(도) 설명                                        | 5                                                       |     |    |
|                                      | ○ 이해(도) 검토(내역) 수월 및 체계화                           | 30                                                      |     |    |
| 3. 이념(적) 실천                          | ○ 개선사항 및 이행(도) 파악                                 | 10                                                      |     |    |
| 4. 지속적(적) 개선                         | ○ 추가 평가기준을 위한 개선수립 및 이행                           | 10                                                      |     |    |
| 5. 기록                                | ○ 심사 (이행) 및 평가의 기록 유지관리                           | 5                                                       |     |    |
| <b>D. 운영관리 수준(점 수)에 따라 평가</b>        |                                                   | 100                                                     |     |    |
| 1. 계획관리 기준도                          | ○ 낮은 계획관리 미한 정도                                   | 30                                                      |     |    |
| 2. 적(적)한 관리 조율                       | ○ 적(적)한 관리로 원(원)수(원)을 초과(초과)한 정도 및 평가 점수 정도       | 10                                                      |     |    |
| 3. 관리(도) 4대 필수                       | ○ 산업(도) 평가 및 필수 관리(도)의 준수(도)로 조정 노력(도)            | 10                                                      |     |    |
| 관리(도)의 준수                            |                                                   |                                                         |     |    |
| 4. 관리(도) 조사 및                        | ○ 관리(도) 조사(도) 및 관리(도) 관리(도) 조사(도) 및               | 25                                                      |     |    |
| 회계                                   | ○ 관리(도) 관리(도) 관리(도) 관리(도) 관리(도)                   | 25                                                      |     |    |
| <b>E. 합(합)적(적)한 자(자)재(재)관리(리) 수준</b> |                                                   | 100                                                     |     |    |
| 합(합)적(적)한 관리(리)                      | 1. 자(자)재(재) 관리(리) 수준                              | ○ 경쟁업체 자(자)재(재) 관리(리)의 안전(도)보장(도) 및 관리(도)수행(도) 평가(도) 점수 | 50  |    |
|                                      | 2. 자(자)재(재) 관리(리) 수준                              | ○ 경쟁업체 자(자)재(재) 관리(리)의 안전(도)보장(도) 및 관리(도)수행(도) 평가(도) 점수 | 50  |    |

- 81 -

##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표]

● **등급관리(고용부)**

- A등급

- ✓ 다음년도 1년간 **감독유예**(고용부)
- ✓ 다음년도 1년간 KOSHA18001 **사후심사비 할인**(공단)

- B등급

- ✓ 인센티브 없음

- C등급

- ✓ 2회연속 'C등급'평가 시 안전보건  
개선계획 또는 안전보건진단명령  
(고용부)

## 프로그램 추진 우수사례 (참조)

공단([www.kosha.or.kr](http://www.kosha.or.kr)) ⇒ 사업안내/신청 ⇒  
산업안전 ⇒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 ⇒ 추진사례

## IV. 우수사례 발표대회

###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대회

- 개최시기 : 7월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 행사 시
- 장 소 : COEX(서울)
- 참가대상 :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사업장(모기업)
- 시상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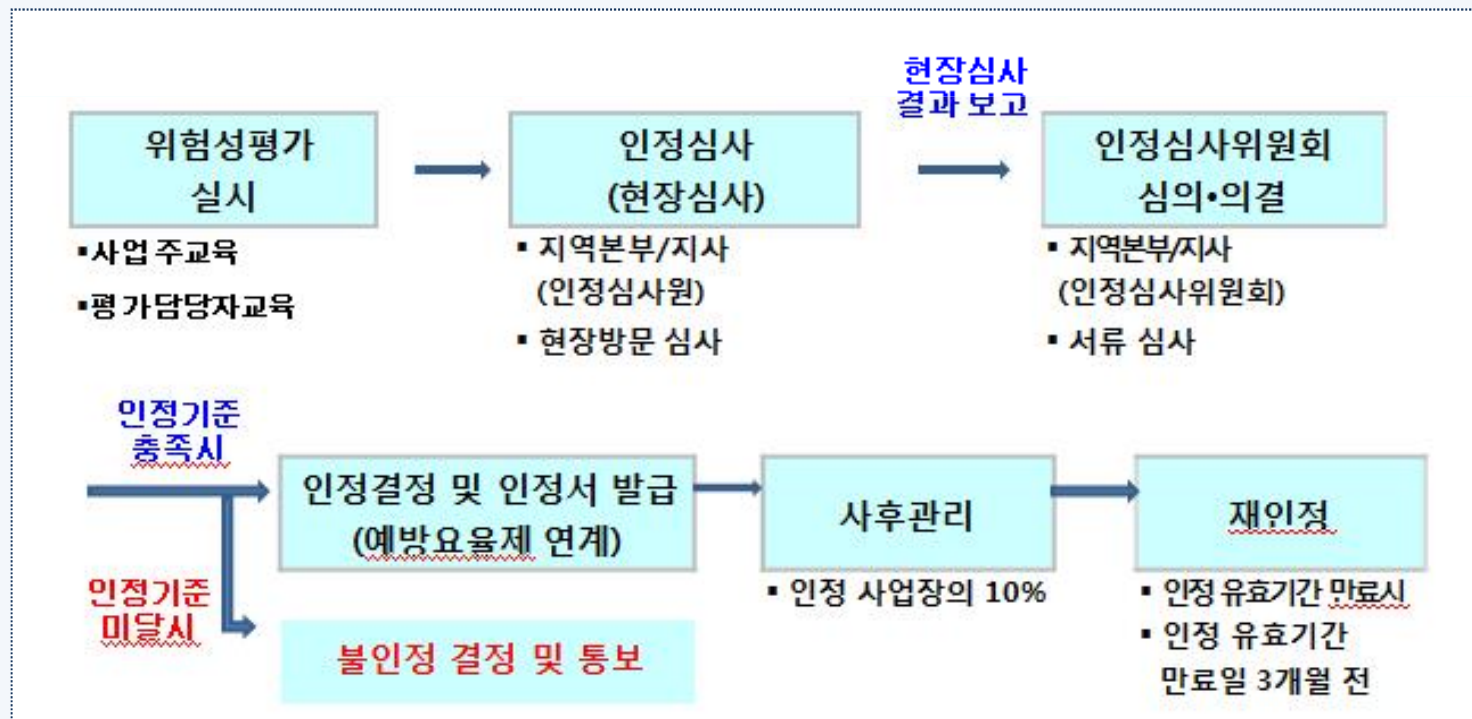
| 구 분  | 훈 격       | 대 상(개소) |        | 시상내역                 |
|------|-----------|---------|--------|----------------------|
|      |           | 제조 분야   | 서비스 분야 |                      |
| 대 상  | 고용노동부 장관상 | 1       | 1      | 상장 및 상금<br>(각 200만원) |
| 최우수상 | 공단 이사장상   | 1       | 1      | 상장 및 상금<br>(각 100만원) |
| 우수상  | 공단 이사장상   | 2       | 2      | 상장 및 상금<br>(각 50만원)  |

\* 발표대회 세부일정 확정 시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및 사업장에 안내 예정

## V. 참고(위험성평가 인정)

### □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 대상 :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
- 신청 :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에서 신청
- 업무처리절차



## IV. 참고(산재예방 요율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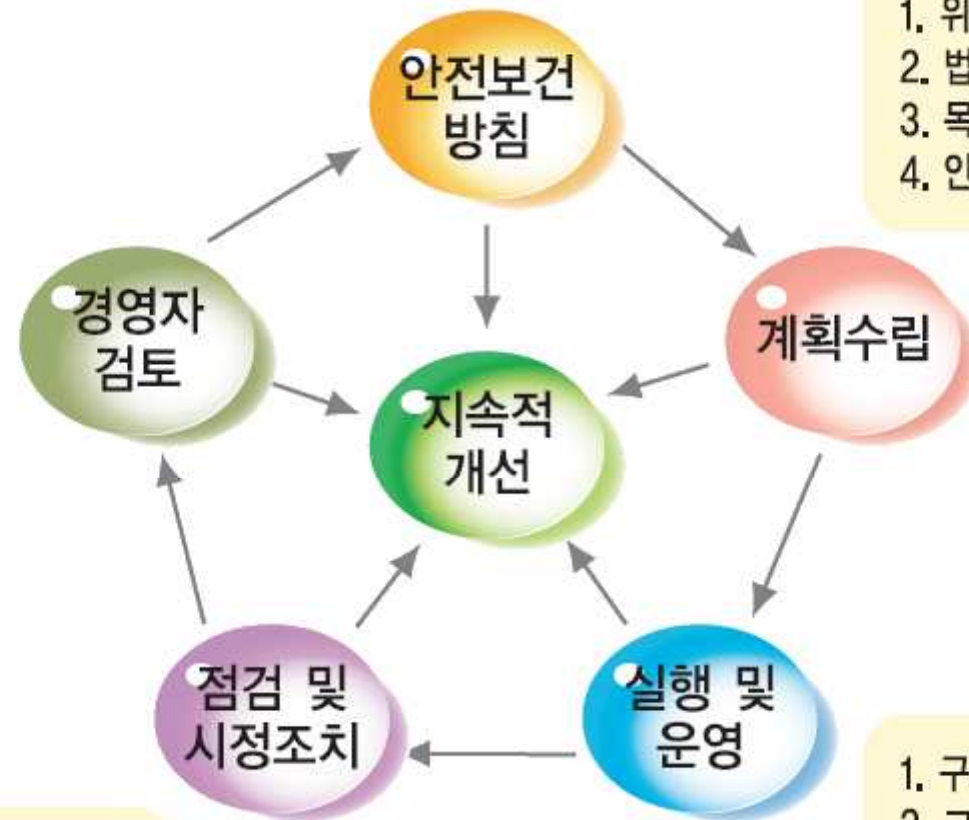
### □ 산재예방 요율제

- 개념 : 안전보건활동 우수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율 인하
- 적용대상 : 제조업 50명 미만 사업장(보험료징수법)
- 적용방법
  - ✓ 보험료 할인율 : 위험성평가 20%, 사업주 교육 10%  
※ 위험성평가인정과 사업주교육인정 중 인하율이 큰 보험료 적용.
  - ✓ 인정 유효기간 : 위험성평가 3년, 사업주 교육 1년
  - ✓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산재보험료율 인하
  - ✓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적용
- 인정취소 :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인정 취소(고용부)
- 업무처리절차

산재예방요율의 신청(사업주)→재해예방활동 수행(사업주)→재해예방 활동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안전보건공단)→보험료율 반영(근로복지공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위험성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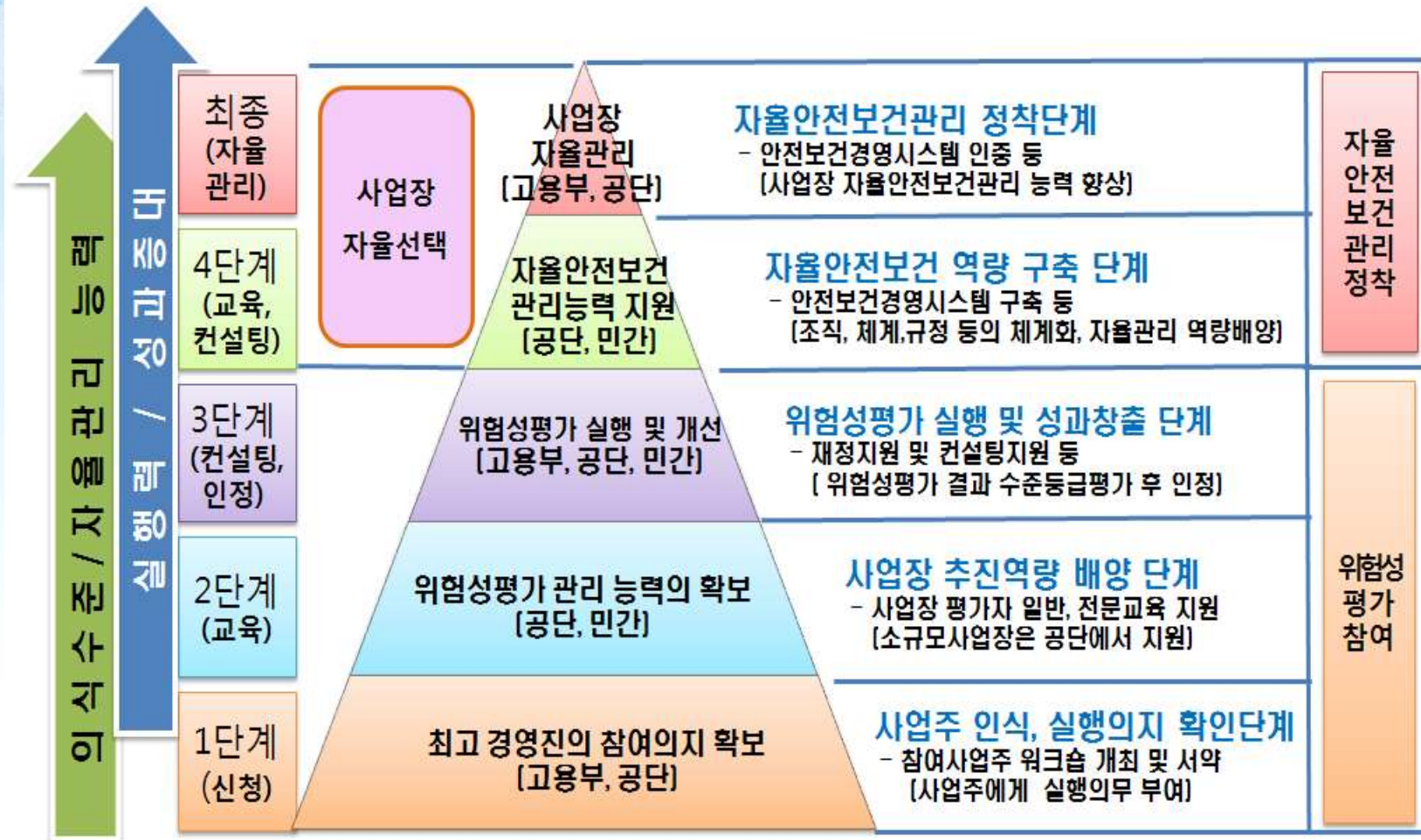


1. 위험성평가
2. 법규 등 검토
3. 목표
4. 안전보건활동추진계획

1. 구조 및 책임
2. 교육훈련 및 자격
3.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4. 문서화
5. 문서관리
6. 안전보건활동
7. 비상시 대비 및 대응

1.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2.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3. 기록
4. 내부심사

# 한국형 모델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사업장이  
우리나라의 안전보건을 이끌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